

Q 상담실

법률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발행가액 및 실권주 배정

고창현

본회 상담역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Q

주권상장법인인 당사는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있어서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데 있어 발행가액의 제한이 있는지요? 당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사회가 임의로 배정할 수 있는지요?

A

1. 발행가액 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는 ‘주주배정 증자’,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증자’ 및 3)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일반공모증자’가 있습니다.

이 중 제3자 배정증자 및 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 이외에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므로 그 발행가액이 공정하지 않으면 기존 주주가 손해를 입게 되어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발행가액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제3자 배정 증자의 경우에는 10% 이내, 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3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그러나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가 신주를 지분비율에 따라서 인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발행가액에 따라서 주주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발행가액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사에서 자율적

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배정 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주 중 청약을 하지 못하는 주주들은 할인발행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 제3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주주배정 증자를 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함으로써 주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실권주 배정

만약 주주배정 증자 과정에서 기존 주주가 신주 청약을 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증서도 처분하지 않아서 결국 해당 신주인수권 부분이 실권되는 경우, 실권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발행을 철회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다만,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 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 2)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1)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가 아닌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초과청약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단, 초과청약은 기존에 배정된 주식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3)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 상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증권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4) 주권상장법인이 최초 유상증자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권주가 생긴 경우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실권주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배정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8).